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

의 안 번 호	2837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5월 26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는 서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(인공지능, 로봇, 바이오 등)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조성·운영 중임
- 나. '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투자계정 전출금이 편성되어 '25년 펀드 출자계획(안)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자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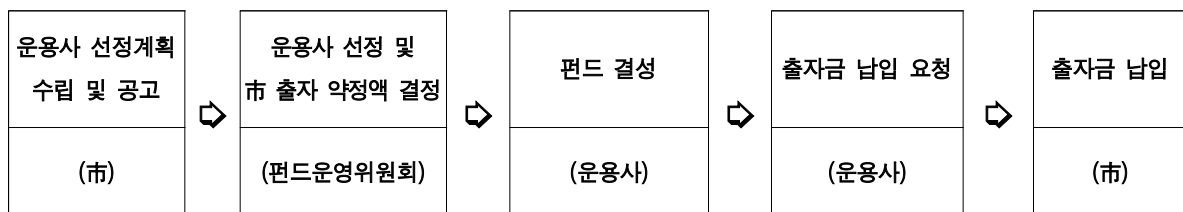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
-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

나. 출자 개요

○ 출자사업

펀드명	市 출자약정액	조성액	조성기간
미래혁신성장펀드	1,751억원	3조 6,857억원	'19년~'22년
서울 Vision 2030 펀드	3,500억원	5조원(목표)	'23년~'26년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	20억원	200억원	'23년

〈 서울시 벤처펀드 출자 방식 〉



* 벤처투자조합, 모태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→ 펀드 결성

* 투자기간(4년) 동안 출자금 분할 납입 → 회수기간(4년) 동안 출자금 회수
(출자금 납입 후 출자증권 취득)

○ 출자 재원 :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

○ '25년 출자계획 변경(안) : 829억원

- 서울 Vision 2030 펀드 : 697억원(추경 100억원)

- 미래혁신성장펀드 : 116억원

-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5호 : 9억원

-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: 7억원(추경, 민생노동국 신규 출자)

다. 출자 필요성

- 총 3.7조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 펀드는 '19년부터 조성되어 차세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·벤처기업에 투자해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

* 피투자기업 1,549개사, 매출증대 4조 4,387억원, 고용창출 22,415명('24년말 기준)

- 총 5조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서울 Vision 2030 펀드는 '24년까지 2.6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였으며, 인공지능 펀드 등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

* '23년 700억원, '24년 810억원 市 출자약정하여 벤처기업에 투자 중

(피투자기업 357개사, 매출증대 7,229억원, 고용창출 1,314명('24년말 기준))

- '23년 200억원 규모로 조성된 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는 서울 소재 녹색기업에 투자하여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

* '23년 조성 후 4개사 27억원 투자('24년말 기준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-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

제8조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

-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-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1항

제59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

제5조(기금의 용도)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2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-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1항

제23조(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한 지원·특례 등) ① 시장은 녹색기술·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,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 반영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 성 자 : 경제실 창업정책과 송정민 (☎ 2133-4757)

[붙임]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제정 펀드 출자계획(안)

분 야	주 요 내 용	출 자 액	
		당초 계획	'25년 변경
계		602억원	829억원
미래혁신성장 펀드		116억원	116억원
① 4 차 산 업 혁 명	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 지원	11억원	11억원
② 스 마 트 시 티	스마트시티 인프라 및 솔루션 분야 지원	38억원	38억원
③ 창 업 지 원	원천기술, 지식 기반 창업기업 지원	18억원	18억원
④ 재 도 전 지 원	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재도전 창업기업 지원	8억원	8억원
⑤ 서 울 바 이 오	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	36억원	36억원
⑥ 문 화 콘 텐 츠	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산업 지원	5억원	5억원
서울 Vision 2030 펀드		477억원	697억원
① 디 지 털 대 전 환	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기술 지원	71억원	89억원
② 인공지능대전환	인공지능(AI) 기반 및 인공지능 기술 적용 기업 지원	-	50억원
③ 서 울 바 이 오	바이오, 의료, 헬스케어 유망기업 지원	60억원	110억원
④ 첨 단 제 조	첨단기술을 통한 제조공정 혁신 및 신제품 생산기업 지원	58억원	73억원
⑤ 창 조 산 업	지식재산권 기반 생산, 유통, 마케팅 등 종합 지원	75억원	94억원
⑥ 첫 걸 음 동 행	창업 초기기업, 경영위기·재창업 기업, 대학창업기업 지원	49억원	76억원
⑦ 스 케 일 업	스케일업 및 해외 진출 지원	144억원	180억원
⑧ 창 업 지 원	초기창업 투자 강화 및 상생협력	20억원	25억원
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		9억원	9억원
녹색기업창업 펀드 제5호	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 산업 지원	9억원	9억원
소상공인 더성장 펀드		-	7억원
소상공인 더성장 펀드	혁신·성장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	-	7억원

※ '25년도 시장상황 및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